

감동과 재미, 흥행 세 마리의 토끼를 잡다

안종주 박사(언론인, 칼럼니스트, 보건학)

<에린 브로코비치>를 빼놓고 환경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팔소 없는 찌뽕을 먹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줄리아 로버츠라는 주연 배우의 명성, 그리고 이 작품이 2001년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각각 줄리아 로버츠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으며 남우주연상 후보, 감독상 후보에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영화는 1992년에서 1996년까지 4년에 걸쳐 미국의 거대기업인 PG&E(Pacific Gas and Energy)를 상대로 무려 3억 3300만 달러라는, 단일 환경 소송으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액의 보상을 받아낸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진한 감동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주었다. 미국에서 2000년 3월 개봉돼 6개월만에 1억2500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는 상당한 관객을 동원했으며 그 동안 교육방송, KBS 등 공중파방송에서 일요시네마, 주말영화 등으로 여러 차례 방영한 적이 있어 매우 친숙하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소송 사건의 주인공이랄 수 있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니다.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조사관이었다. 일개 조사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노력 끝에 회사의 진상 은폐 기도를 뚫고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브로코비치는 이 소송으로 미국에서 일약 유명인으로 떠올랐으며 영화의 흥행 성공으로 다시 한 번 유명세를 전 세계에 떨쳐 환경 소송의 대모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브로코비치는 환경보건 전문가도, 환경보건 전공자도 아니다. 그녀는 이 소송의 조사를 맡으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1992년 캘리포니아 주의 작은 사막 도시 힝클리에 사는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인근 퍼시픽 가스·전기 회사의 천연가스 압축공장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임을 직감했다. 그로부터 4년 뒤 법정에서 이 회사가 부식을 막기 위해 수년간 냉각탑 물 안에 발암성을 지닌 6가 크롬을 첨가했으며 이 때문에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을 은폐하려던 회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3억33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미국에서 담배와 석면 피해 소송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재판이었지만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 유해물질과 관련한 전체 보상 액수였다.

미국 거대 에너지회사에 맞선 에린 브로코비치의 완벽한 승리

영화는 힝클리 지역 주민들의 소송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실제 브로코비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94년 캘리포니아 주 케틀먼에 있는 또 다른 PG&E 시설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힝클리 소송에서처럼 밝혀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샌와킨밸리에 있는 공장의 대형 냉각탑과 그 근처의 직원 숙소를 조사했다. 변호사는 오염의 징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힝클리 지역 조사에서 경험을 쌓은 브로코비치는 그곳의 침엽수 잎이 힝클리에서처럼 흰색 분말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수자원관리부를 찾

아 1964년 내무부에서 PG&E로 보낸 공문에 케틀먼의 우물에 크롬이 과도하게 들어있다고 통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아냈다. 6가 크롬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노출되면 코의 양 구멍 사이에 있는 물렁뼈에 출혈을 일으키고 심하면 구멍을 낸다. 비중격천공 또는 콧물렁뼈푼림증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크롬도금 공장 등에서 6가 크롬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직업병의 일종으로 널리 알려졌다지만 히글리나 케틀먼에서처럼 6가 크롬에 오염된 공기와 물을 오랫동안 마실 경우 생길 수도 있다.

케틀먼의 주민과 이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던 노동자 등 9백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6가 크롬에 오염된 물·땅·공기가 자신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며 공장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온 안개(미스트)에 크롬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오염된 우물물을 식수와 목욕물로 사용했다. 케틀먼 주민들은 그동안 코피가 자주 나는 등 몸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를 건조한 기후 탓으로 여겼고 다른 불편한 증상들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회사의 내부 문서에서 우물의 크롬 함유량이 식수 허용 기준치 0.1ppm의 175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 저지른 미국 기업의 부도덕성, 대부분 마찬가지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오염과 오염원인 등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부인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환경오염 피해 사건에서, 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진실과 보상 측면 모두에서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공해나 시멘트 공장 먼지 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암이나 진폐증에 걸려도 기업들은 '나몰라'한다. 석면의 경우 과거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 방직공장이었던 A업체 주변 주민들이 석면 과다 노출로 인해 악성중피종에 걸려 숨진 뒤 그 유족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기업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음이 정부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해당 기업들은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국내 굴지의 한 전자회사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각종 암과 치명적인 질환으로 숨지거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경우는 소수에, 그나마 주로 소송을 통해 그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상 액수는 히글리 지역 주민에 견주면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수백억 원의 징벌적 배상 판결을 해주면 좋으련만.

이와 함께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이 처음에는 거대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거나 소송을 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환경 소송은 승소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기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업과의 싸움에 앞장서지 않는다. 이런 환경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대부분 못살고, 못 배우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최종 판결까지 5~6년씩 걸리는 소송을 꺼린다. 대기업 공장 인근은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친인척과 노동자 자신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대기업과의 소송 등 싸움에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환경 피해의 대부분은 일본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병 사건에서도 보듯이 피해자가 양산된 뒤에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점이다. 핑클리 주민이나 케틀먼 주민 피해자 수가 6백 명이 넘는다는 것과 우리나라 원진레이온 노동자 피해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피해자 수도 1천명이 넘는다는 점이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6가 크롬과 질병>

크롬화합물은 크롬 특수강, 초내열합금, 합금첨가제, 전기저항 발열재, 크롬도금재료, 특수용 접봉의 피복재 등으로 사용된다. 크롬이 오염물질로서 발생하는 곳은 △합금제조공정 △제련공정 △크롬화합물 제조공정, 그리고 도장, 가죽손질과 같은 크롬화합물 사용공정이다.

독성 증상을 심하게 나타내는 것은 주로 6가 크롬이며 급성중독 증상으로는 피부접촉의 경우, 화상, 짓무름, 괴사 등의 국부 증상을 일으키며, 흡입하면 기침, 녹황색가래, 호흡곤란, 폐울혈 증상을 일으킨다. 전신증상으로는 간 장애,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특히 혈뇨, 요독증을 보이는 중증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만성중독 증상으로는 6가 크롬의 1차 자극에 의해 손톱바닥, 손등, 얼굴, 발가락 등 피부에 자그마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가렵다. 이를 긁을 경우 상처가 나며 심하면 그 부위에 궤양이 생긴다. 점막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병에 걸리기 쉽고, 비점막, 인후두에 염증, 궤양을 만들기 쉽다. 특히 크롬 분진이나 증기 등과 접촉할 경우 콧구멍막에 출혈이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궤양으로 이어져 마침내 그 유명한 비중격천공이 생기게 된다.

이밖에 6가 크롬은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있음이 인정됐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도 폐암 발생이 보고됐다. 주로 크롬산 제조업과 안료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 : 안종주 박사(언론인, 칼럼니스트, 보건학)